

서울특별시

우편번호 100-744 서울. 중구 태평로1가 31 / 전화 (02) 731-6371~3 / 전송 (02) 731-637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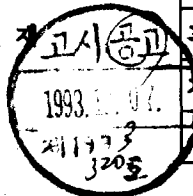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: 건행 58150 - 2837

시행일자 : '93. 12.

경 유 : (제 1 안)

수 신 : 내부결재 **고시(공고)**

참 조 :



취급		시 장
보존		 법무담당관 법제심사계장
국 장	전 결	
과 장		
계 장		
기안	조행육	협 조

제 목 :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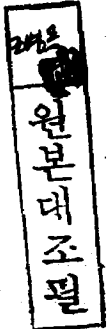
1. 시장방침 1954호('93. 12. 8) 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(안)과 관련임.
2. 도로법(법률제4545호, '93. 8. 10) 및 도로법시행령(대통령령제13958호, '93. 8. 14)

개정으로 도로징용료 산정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조정함에 있어,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개정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입법예고안 : 별첨
- 나. 입법예고기간 : '93. 12. 10 ~ 12. 16 (7일간)

첨 부 :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(제 2 안)

수 신 : 공보관

참 조 : 공보1담당관

제 목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제 외의

1.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고자 시보게제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공고안 : 별첨

첨 부 :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. 끝.

도 로 국 장

(제 3 안)

수 신 : 수신처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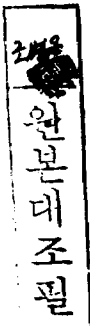
제 목 :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도로법(법률제4545호, '93. 3. 10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제13958호, '93. 8. 14) 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 함에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개정에 참고하고자하니 '93. 12. 16까지 건설행정과장 참조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일내 제출사항이 없으면 별도 의견 없는것으로 보아 처리할 것임.

가. 의견조희사항 : 별첨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

첨 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1부.

끝.

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:서기이, 서관01-02, 서국01-13, 서본부01-04, 서구01-22(건설관리과장참조)

심사	1993. 12. 10	제 204 호
담당자	법제심사지장	업무담당자
김	서	정

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-30 호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3 년 12 월 10 일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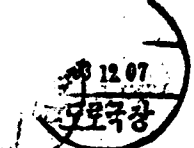
1. 개정 사유

가. 도로법(법률 제4545호, 1993. 3. 10) 및 같은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958호, 1993. 8. 14)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

나. '82. 6월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사용료의 현실화

2. 주요 골자

가. 육교사용료 조정



현행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사용료(7일이내): 21,000원 ○ 기본사용일수초과시(매1일당): 2,100원 	<p>표시면적 1㎡당 1일 300원의 2분의1 적용</p>

3. 의견 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'93. 12. 1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세워서 작성)를 서울특별시법제(참조 건설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번호 : 731-6373, 731-6773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전화번호

원본대조필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중 '별표 2의'를 '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 3호를 적용한 점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'으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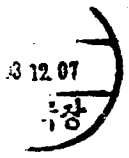
<별표 2>를 삭제한다.

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육교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육교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.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-②(생략) ③홍보물 설치를 위하여 육교의 사용허가 를 받고자 하는자는 <u>별표 2</u>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 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-②(현행과같음) ③..... <u>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 조례 별표1의 3호를 적용한 점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</u></p>
<p><u><별표 2></u></p>	<p><u>(삭제)</u>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0px;">  </div>

조문

원본대조필